

입법예고

공 급 망 위 험 대 응 을 위 한
필 수 농 자 재 등 지 원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제 정 안

농 립 축 산 식 품 부
(농 업 정 책 과)

1. 의결주문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급망 위험에 따른 필수농자재 등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지속가능한 생산활동 보장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201호, 2025. 12. 16. 공포, 2026. 12.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필수농자재등 실태조사의 방법·범위·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

나. 필수농자재등 실태조사를 위하여 출입하여 조사하는 공무원의 증표를 [별지 서식]으로 규정함(안 제3조)

다. 필수농자재등 실태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작성하는 통계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라. 필수농자재등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마. 필수농자재등 실태조사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없음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범위·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국별 필수농자재의 원자재 수입가격 및 수입물량에 관한 사항
2. 필수농자재의 제품별 판매가격과 판매가격 산정근거 및 판매물량에 관한 사항
3. 필수농자재의 제조·판매업자별 재고물량에 관한 사항
4. 농업경영체별 필수농자재등의 구입가격 및 구입물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수농자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를 시

작성하기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필수농자재등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수농자재등 제조·판매업자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제4조(통계 작성 범위) 법 제10조제5항 전단에 따른 통계 작성의 범위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8항 후단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별 농업경영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5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정보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기관 지정 등)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별표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조사공무원 증표(제3조 관련)

조사공무원 증표	
1. 소속:	3.5×4.5cm (3개월 이내의 촬영사진)
2. 직위:	
3. 성명:	
4. 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 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필수농자재등의 제조·판매업자의 사업장 에 출입하여 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공무원임 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시장·군수·구청장 인	

80mm×100mm[백상지(150g/㎡)]